
		<h1>보도자료</h1>			
보도 일시	2022. 3. 10.(목)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3. 10.(목)		
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책임자	과 장	전해선 (02-2110-1530)	
		담당자	사무관	김태균 (02-2110-1533)	

방통위, 「앱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

- ▶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령 본격 시행 (3.15)
- ▶ 위법성 판단을 위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기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3.8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앱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의결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늘 방통위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된 「앱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안 제3조~제5조)

‘거래상의 지위’는 앱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 시장의 상황, 해당 앱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모바일콘텐츠 등의 특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강제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 선택이 자유로운지 여부,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이익 저해성, 앱마켓시장의 공정경쟁 저해성 및 이용자의 편익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둘째, 모바일콘텐츠 등의 부당한 심사 지연행위 및 삭제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부당성’의 세부기준 마련하였다. (안 제6조~제7조)

‘부당성’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 지연 및 삭제 사유,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 여부, 심사 및 삭제 기준의 사전고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앱마켓사업자, 앱개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앱마켓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시행령에 이어 위법성 판단기준인 고시가 마련되었다”고 밝히며,

“법 준수를 지연하거나 우회하는 등 앱마켓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앱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 「앱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고시)」 제정안. 끝.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1장 총칙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이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제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2. “앱 마켓”이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앱 마켓서비스”란 부가통신역무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앱 마켓사업자”란 앱 마켓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란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3조(거래상의 지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①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해당 앱 마켓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2. 앱 마켓 시장의 상황
 3. 해당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4. 모바일콘텐츠 등의 특성
 5. 모바일콘텐츠 등의 대안적 판매 경로의 존재 여부, 해당 앱 마켓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등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해당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의존성의 정도
- ② 직전 사업연도에 앱 마켓서비스에 따른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상의 지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제4조(강제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특정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초래되는

지 여부

제5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이용자의 편익 증대효과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이용의 제한 정도,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의 정도
2. 앱 마켓 시장,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속한 시장, 결제 시장 등에서 공정한 경쟁기반 저해 우려

제3장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6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심사 지연의 사유
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기간
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 심사의 기준, 기간 및 절차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 심사 지연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고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

에 따라 고지한 심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 심사 지연에 따른 적절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부당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제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였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삭제의 사유
2.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의 삭제 여부
3. 앱 마켓사업자가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모바일콘텐츠 등을 제공하는지 여부
4. 삭제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 여부
5. 삭제의 구체적 사유를 삭제 전에 고지하였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가 제4호에 따라 고지한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지수단의 적절성
6. 삭제에 따른 적절한 불만처리절차 제공 여부 등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